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0구합36626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국방부장관	
변 론 종 결	2011. 8. 10.	
판 결 선 고	2011. 10.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6.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 3. 26. 18시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열상감지장치, Thermal Observation Device, 이하 'TOD'라 한다) 동영상 일체와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이하 '이 사건 TOD 동영상' 이라 한다)' 및 '2010. 3. 26. 18시부터 같은 날 22시까지 작성된 천안함의 KNTDS(대한민국



해군 전술자료처리체계, Korea Naval Tactical Data System, 이하 'KNTDS'라 한다) 관련 자료 및 문서 사본 일체, 이를 평문화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이하 '이 사건 KNTDS 자료'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TOD 동영상, KNTDS 자료를 포함한 침몰한 천안함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23. '이 사건 TOD 동영상과 KNTDS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TOD 동영상, KNTDS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2, 1-3호증

2.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TOD 동영상, KNTDS 자료는 천안함의 침몰경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낭비의 종식을 위하여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큰 점, 피고는 이미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하였으므로 이 사건 TOD 동영상, KNTDS 자료 역시 실질비성(秘性)을 상실하여 그 공개로



인한 국가안전보장의 침해우려가 없는 점, 이 사건 TOD 동영상, KNTDS 자료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증의 형태로 공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등급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처분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인정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TOD 동영상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TOD 동영상은 백령도에 설치된 TOD 초소에서 촬영한 열상감지 영상으로서 촬영 대상 지점의 방위각, 촬영배율, 촬영시간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TOD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 군의 TOD 감시구역, 감시방법, 지형지물, TOD 감시초소의 위치 등을 곧바로 알아내거나 추론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TOD 동영상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위와 같은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백령도의 전략적 중요성, 남북간의 군사대치상황, 위와 같은 정보의 군사적 가치 등을 감안하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KNTDS 자료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NTDS는 우리 영해와 영공, 영토상의 주요한 전략거점, 이동 중인 항공기와 선박의 소속·위치·속도 등이 실시간으로 지도상에 표시되는 자료인 점, 이 사건 KNTDS 자료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군사Ⅱ급비밀로 지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KNTDS 자료를 통하여 우리 군의 군사정보수집능력, 군사정보처리방법, 전략거점의 위치와 종류, 천안함을 비롯한 우리 해군 함정의 기동방식, 교신방식과 내용 등을 직접 알아내거나 추론해 낼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KNTDS 자료를 통하여 직접 알아내거나 추론해 낼 수 있는 위와 같은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군의 방위체계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정도로 중요할 뿐더러 남북간의 군사대치상황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인지 여부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 이 사건 TOD 동영상, KNTDS 자료는 군사적 가치가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 KNTDS 자료는 군사Ⅱ급비밀로 지정되어 있다.

○ 피고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민·군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92일간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언론매체·출판물 등을 이용하여 상세하게 공개하였다. 이와 같이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공개된 이상,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 사건 TOD 동영상이나 KNTDS 자료가 추가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은 낮다.

○ 특히 이 사건 TOD 동영상 중 일부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고, 미공개 부분이 이제껏 공개된 부분보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원고들의 이 사건 TOD 동영상, KNTDS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한 것이고, 원고들이 위 정보에 관하여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에 의하여 침해되는 원고들의 이익 역시 다른 국민들의 그것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다.

○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TOD 동영상, KNTDS 자료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해관계인들만의 참석하에 비공개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국민 일반에 대한 이 사건 TOD 동영상, KNTDS 자료의 공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04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_____

 판사 양순주 _____

 판사 이재홍 _____